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의 정의 정비 등(안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가. 개정 이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정맥으로 나누고 있어 동 정의를 인용하여 산줄기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함

\* 현행 법령은 ‘산맥’을 기준으로 산줄기가 정의되어 있으나, ‘산맥’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산맥’이라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산줄기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나. 개정 내용

- 현행 산맥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산줄기의 정의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백두대간, 정맥 등으로 정비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줄기’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줄기에 포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산림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산줄기의 개념을 일관성 있고 현실 산줄기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전용제한지역 운영 도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임업용산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허용 (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 가. 개정 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에 포함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 지원 필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공익용산지에서도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

### 나. 개정 내용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에 포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지원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에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킬러규제)로 개선요청('23.8월)

###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안 제20조제7항)

#### 가. 개정 이유

-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이용 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10.19. 기준) : 89개 시군구

#### 나. 개정 내용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 일부기준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 허용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 가. 개정 이유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등의 협의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주된 인허가처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협의 시점과 주된 인허가 시점의 연도가 다를 경우 협의 시점에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주된 인허가시까지 미수납채권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음
- 「행정기본법」 제25조는 “미리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목적사업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하여 수허가자의 부담완화 및 대조비 체납을 최소화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목적사업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수허가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명확화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최소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2023년 산지관리분야 국민제안 공모제 채택제안

##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 절차 정비(안 제 24조제4항)

### 가. 개정 이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지이용과정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결정과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필요

### 나. 개정 내용

- 산림청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결정·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결정과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안 제25조의2제6항)

### 가. 개정 이유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되며,  
허가기간 중(복구준공검사 전) 감면되는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허가대상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변경된 경우”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신고대상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며 '10.12.7.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를 환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복구준공검사 전에 기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대체되어 새로 수리된 경우를 환급대상에 포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준공검사 전 사용계획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부과대상으로 확정된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2023년 산지관리분야 국민제안 공모제 채택제안

## 7.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 27조, 제29조의2)

### 가. 개정 이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결정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 필요

### 나. 개정 내용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고시에 관한사항(제1분과)과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민통선산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제2분과)을 추가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과정의 절차적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8.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조사기관 추가(안 제34조제1항)

### 가. 개정 이유

-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 전 전문조사기관에서 석재의 매장량 및 품질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대상지에 한하여 토석채취를 허가하고 있으며,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아래 기관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함
-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산림청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며, 기관 내 석재산업실을 갖추고 석재분포도 조사제작,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 한국산림토석협회는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라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토석채취지·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을 업무로 하고 있어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 나. 개정 내용

- 채석경제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토석관련 전문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채석경제성평가 및 토석수급에 기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채석단지 지정기준 완화(안 제39조제6항제6호2)

### 가. 개정 이유

- 안정적 토석공급을 위해 채석단지 활성화가 필요하나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인해 기존단지 확대가 어려워 원활한 토석수급에 차질 발생
- 기존 채석단지 확대의 불가피성, 채석단지 운영 활성화 정책목표 등 석재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

\* 한국산림토석협회 규제개선 요구('22.8)

### 나. 개정 내용

-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도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채석단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해 채석단지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토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0. 6·25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안 제46조제1항제8호 신설)

### 가. 개정 이유

- 산지에서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구비 예치 대상임
- 6·25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사업은 공익성이 크고 사업의 특성상 범위 특정을 통한 복구비 산출 또한 어려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대해 산지 복구비 예치 면제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6·25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의 원활한 추진 지원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건의사항[조사발굴처-676(2022.12.20.)]

## 11.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 가. 개정 이유

- 산림청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주택 신설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인 경우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건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않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편입이 가능하도록 산지전용신고 기준 정비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농가주택의 산사태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산림청 산사태 인명피해저감대책(’23.7.18)에 반영

## 12.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재해위험 검토실시 등 설치조건 정비(안 별표 3의3 제3호나목)

### 가. 개정 이유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재해위험 검토를 의무화하는 한편, 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현지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여 추후 임도전환 시 복구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입로의 연장거리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규정 등 일부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재해위험 검토 결과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진입로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허용하도록 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을 통한 경관훼손대책 수립을 제외하도록 하고, 진입로의 연장거리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설치조건 일부 완화 및 정비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연장거리 제한 및 중복규제(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 완화, 풍력발전시설진입로의 재해위험 최소화 및 활용도 제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3. 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 지역 완화(안 별표 3의3 비고 제1호)

#### 가. 개정 이유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상 행위를 제한하지 않음에도 [별표 3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의 설치조건에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일 것’인 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저촉되어 시설(또는 행위)이 제한되는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비고 1 제1호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지역에 대해 공익용산지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허용되는 시설 또는 행위인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도록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농막을 포함한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가축의 방목, 물건의 적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은 해당 법률에서 허용되면 공익용산지에서 시설 또는 행위 가능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농막’의 설치지역 규제개선 건의 접수 ('22.12.13.)

## 14.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

### 가. 개정 이유

-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 필요('23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반영)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개정·시행('21.12.16)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66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받아 토사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를 검토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나목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의 전용대상 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운영 취지 및 현실 운영에 맞게 개정 필요
-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의 판단 시 현행도 실제 전용하려는 산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제2호다목1)나)는 전체지역면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별표 4 제1호다목 세부기준란 1)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닐 것”을 추가하고 단서에 재해저감대책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를 신설하며, 제2호다목 ‘전용면적’란에 660제곱미터 이하에도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 별표 4 제2호나목 전용면적란 중 2만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로 함
- 별표 4 제2호다목에서 ‘전용면적 적용’란을 일부 보완하고, 다목1)나)에서 산지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 25도 이상인 ‘전체지역면적’에서 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산지 재해관리 강화 및 법령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5. 채석경제성평가 기준 정비(안 별표 7)

### 가. 개정 이유

- 채석경제성평가 시 시추를 통해 석재의 품질 및 매장량을 분석하나 기준이 허가면적으로 되어 있어, 실제 채취하지 않는 구역까지 포함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추내용을 결정하는 부작용 발생
- \* 토석채취허가 관련 타 조문해석 시에도 전체 허가면적이 아닌 실제 토석을 채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왔음

- 법제처 법령해석 10-0331('10.10월) : 허가권자 구분은 토석 채취면적 기준
- 법제처 법령해석 11-0111('11.4월) :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토석 채취면적 기준

### 나. 개정 내용

- 채석경제성평가 시추기준 면적을 허가면적에서 채취면적으로 변경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실제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을 기준으로 시추를 실시하고,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게 석재 매장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토석채취허가제도 운영에 기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6. 건축용 등 토석채취허가면적 기준 완화 (안 별표 8)

### 가. 개정 이유

- 토석채취허가기준 상 최소 허가면적은 5만㎡이나,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지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1회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용 토석채취의 특수성, 일률적인 허가면적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건축용 등 토석채취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면적 기준적용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 \* 한국산림토석협회에서 규제개선 요구('22.8)

### 나. 개정 내용

- 건축용·공예용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최소 허가면적 예외규정(기존 허가지 연접해 20% 확대) 적용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토석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허가면적 기준 적용을 통해 석재 산업계 부담경감 및 국산석재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7. 토석채취허가 시 적치된 토사의 안전관리 기준 등 마련(안 별표 8)

### 가. 개정 이유

- 별표 8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은 재해예방 및 토석채취 후 원활한 복구를 위해 토석의 용도별로 절개사면(절토 비탈면) 기울기를 정함
  - \* (건축용) 1:0.4 이하, (공예·조경·쇄골재·토목용) 1:0.5 이하, (토사) 1:1 이하

그러나 폐석분토, 표토 등 허가지 내 장기간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성토 및 관리기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

- \* 재해율 비교('22년) : 전체평균 0.63%, 광업(채석포함) 32.52%(평균대비 52배)
-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피해저감계획 수립을 규정 필요

### 나. 개정 내용

-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 복구용 표토 등)에 대한 성토 기울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 안전관리 기준 마련
-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저감계획을 수립을 추가하여 규정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토석채취허가지 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토석채취허가지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8. 연계조문 등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 안 별표 3의3 제4호가목, 안 별표 8의3 제2호가목)

### 가. 개정 이유

- 제4조제2항에서 인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항’이 누락되어 정비 필요
- 제12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6.3.29)으로 기존 별표 1이 별표 1의3호로 이동되었으나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행화 필요
- 「산지관리법」 개정('21.6.15)으로 법 제37조제6항이 법 제37조제7항이 되었으나 연계되는 별표 8의3 제2호가목은 정비되지 않아 정비 필요
- 별표 3의3 제4호 가목 설치조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타당성 평가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9조로 하여 제3조 및 제4조가 모두 포함되도록 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제4조제2항에서 인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을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정정
- 제12조제10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현행화
- 「산지관리법」 개정('16.12.2)을 반영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 중 허가기준 다목에서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산림보호법」 제정('09.6.9)을 반영 비고 3호가목 중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연계조문 등 정비
- 법률 개정('21.6.15)을 반영,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제2호가목에서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연계조문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계조문 등 법령 정비로 법령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 및 원활한 집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